

민간방범기구의 범죄예방 역할과 한계★

공배완*

요 약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범죄행위 자체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물질·인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활동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범죄의 다양화, 광역화, 조직화, 전문화, 흉폭화는 경찰의 방법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되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는 경찰영역의 보완적 관계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단체는 자생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 성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역할에 걸 맞는 사회적 후원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활동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의 개정이나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기구의 정비, 또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기능적 활용 등이 요망되고 있다.

Crime prevention role and limitations of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Gong Bae Wan*

ABSTRACT

Important crime prevention is emphasized.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inal act itself, but with many material and human damage because it is a threat to the safety of civil life. The traditional police power of the police in patrolling the derailment by the diversification of the crime, globalization, organizing, specialization, and ferocious anger by far exceeds the capabilities of the police crime prevention are occurring. Civilian police crime prevention organizations in the area of the region as a base for complementary activities, and even if the purpose of commercial availability, but many organizations is the autonomous and spontaneous personality voluntary work civic life is to serve as the safety fence. But that suits the role of these organizations and social support and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practical and effe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has not been effective. Law reform and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of redundancy, or a series of systematic effort to equip networks and take advantage of the functional and has been factory.

Key words : Security, Security organization, Private security, Crime prevention,

접수일(2012년 4월 25일), 수정일(1차: 2012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7일)

★ 이 연구결과물은 2012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
금 지원에 의한 것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Kyungnam University Foundation Grant, 2012).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1. 서론

방범(Crime Prevention, 防犯)은 “범죄를 막는다”는 범죄예방을 뜻하는 말로서 시민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각종의 활동이나 작용을 의미 한다. 이러한 방범은 국가 공기관인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과 민간에서의 영리기관에 의한 수익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에 의한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관인 경찰의 방범활동은 각종 순찰을 비롯하여 범죄취약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 청소년 선도활동, 풍속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 총기·화약류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러한 경찰의 방범활동은 전통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시행되어 왔으며,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위협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조치로서 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증충적이며 다양화되어 가는 복합적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협을 국가기관만으로 감당하기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방범기능의 보완적이며 보충적 수단으로서 민간차원의 방범장치가 마련되어 발전되어 오고 있다.

민간방범기구로서는 계약관계를 통해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민간경비업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공공적 봉사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들이 있다. 민간경비업체는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개인의 안전장치로서 사회적 정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은 괄목할 만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각종 국제적 행사를 국내에서 치르면서 질적·양적 팽창을 거듭해 온 결과이며, 범죄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국가안전장치의 부족에서 나타난 시민기대의 이동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2011년)는 3,600여개가 넘는 민간경비업체가 시민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사회요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순수한 봉사성격의 자율방범대 및 시민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이나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나 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조직적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 범죄예방활동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간방범기구의 범죄예방 역할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서 각종의 범죄로 인한 사회위험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경찰력의 확보와 전문화가 방범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국가의 예산이나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는 민감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민간경비의 한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 범죄예방의 의의

범죄예방이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의 조치(crime prevention or anti-crime)를 말한다. 범죄는 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보다는 행위발생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범대책이며,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서 안전한 시민생활을 제공한다. 측면에서 중요하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형법적·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로 인한 개인의 생활은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시각이나 영향을 갖게 된다[11]. 따라서 범죄예방장치는 안전적이고 안정적인 시민생활 영위를 위한 최상의 조치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범죄예방의 조치로서 브랜팅 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는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으로 구분하여 사회환경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10]. 1차적 범죄예방의 조치는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을 말하고, 2차적 범죄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면, 3차적 예방은 재범율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화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실제 범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6643>

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또한, 베카리아(Beccaria) 등 고전주의학과에서는 범죄행위자에 초점을 두어 범죄자체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서 잠재적 범죄행위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3]. 반면, 실증주의 학파인 롬프로조(Lombroso), 페리(Ferri), 가로팔로(Garofalo) 등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유전적, 심리적, 생물적 요인이 범죄촉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치료 및 갱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2]. 사회환경을 강조하는 제도학파는 불량한 사회환경이나 사회학습 또는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범죄적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범죄는 특정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개인의 행동이 제도적 일탈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대한 장치도 특정 영역이나 공간, 특수한 인물이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의 보완적 관계에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각도에서 마련되고 있다.

범죄예방 작용은 전통적으로 국가기관인 공권력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왔으나, 민간경비의 발달과 더불어 민간경비전문기관에 의해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수익자들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도 1976년 경비업법의 제정과 더불어 민간경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각종의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됨으로서 민간경비의 양적성장이 이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에 이후로는 각종 첨단장비의 개발과 더불어 통합경비시스템(Total Security System) 개념의 범죄예방장치가 민간경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전문범죄예방기구로서 사회적 정착을 유도하였다[1].

따라서 현재의 범죄예방장치는 사회치안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포괄적 범죄예방기구와 계약관계를 통해 개인(고객)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민간기관에 의한 범죄예방기구가 공존하며 사회범죄예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민간범죄예방 기구와 역할

3.1 민간경비업체

민간경비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공리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설 영리기업이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의 위해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범죄예방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리성(公利性)은 사적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사회적 역할을 말하고, 영리성이라 함은 회사가 대외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그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이익분배설)[2]. 따라서 경비분야에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도 판매활동을 하면서 구매자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수익자 부담원칙), 창출된 수익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복리증진과 회사를 존속·발전시켜 나간다(집단 이익론)[2]. 이에 공권력의 한계와 개인안보의식의 증대는 민간경비의 발전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3].

한국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 제정 이후 사회적으로 정착하면서 경찰치안의 외적 영역에서 시민생활 범죄 예방장치로서 발전해 왔다. 1976년 경비업법 제정당시 9개에 불과하던 민간경비업체가 2010년말 3,473개 업체로 약 363배가 증가하였고[8], 2011년말에는 3,651로 증가되어 집계되고 있다. 양적팽창 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병행하면서 범죄예방의 주체로서 민간경비는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예방의 도구로서 각종 첨단장치의 개발 또한 민간경비 발전의 촉진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의 증가추세는 사회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시민생활의 안전욕구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총체적 불안의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가속화되는 공권력의 부재현상에서 민간경비의 성장추세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은 아직은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력의 대체세력으로서 자리 잡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들도 있다. 공배완(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현재 범죄예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답변(20%)보다는 잘못되어 있다는 답변

(80%)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았으며, 범죄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8%가 시민의 안전의식 미흡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경찰방법활동의 미흡(34%)을 꼽았다. 기타 개인 안전장치의 소홀(16%)과 민간안전기구의 미흡(12%) 등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범죄 예방기관으로서 신뢰할 만한 기관은 경찰이 전체의 5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민간경비회사(21%)와 개인적 대책(19%), 소방(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결과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신뢰도는 일반 시민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퇴색되어가는 반면, 아직까지는 저조한 수준이지만 민간경비에 대한 의존 심리는 높아져 가는 측면이 있다.

<표 1> 범죄예방시스템에 관한 인지도

(단위: 명(%), N=120)

내 용		20대		30대		40대		50대		소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범죄예방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잘된다고 생각한다	2	0	4	4	4	5	7	4	29
	(2)	(0)	(3)	(3)	(3)	(4)	(6)	(3)	(24)	
잘못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다고 생각한다	13	16	11	11	12	10	8	11	91
	(11)	(13)	(9)	(9)	(10)	(8)	(7)	(9)	(76)	
만약 되었던 점?	경찰방법활동의 미흡	5	8	5	2	2	5	4	4	35
	(4)	(7)	(4)	(2)	(2)	(4)	(3)	(3)	(29)	
	시민의 안전의식 미흡	7	6	7	10	11	7	10	8	65
	(6)	(5)	(6)	(8)	(9)	(6)	(8)	(7)	(54)	
개인적 안전장치의 소홀	1	0	1	2	1	2	1	1	1	9
	(1)	(0)	(1)	(2)	(1)	(2)	(1)	(1)	(1)	(8)
민간안전장치의 미흡	2	1	2	2	1	1	0	2	2	11
	(2)	(1)	(2)	(2)	(1)	(1)	(0)	(2)	(2)	(9)
사회범죄예방기관으로서 신뢰할 만한 기관?	경찰	7	8	8	8	8	10	8	10	67
	(5)	(7)	(7)	(7)	(6)	(8)	(7)	(8)	(8)	(55)
	소방	1	0	0	1	2	1	1	2	8
	(1)	(0)	(0)	(1)	(2)	(1)	(0)	(2)	(2)	(7)
민간경비회사	4	2	5	4	4	2	4	2	2	26
	(3)	(2)	(4)	(3)	(3)	(2)	(3)	(2)	(2)	(22)
개인적 대책	2	4	1	1	2	4	2	2	2	19
	(2)	(3)	(1)	(1)	(2)	(3)	(2)	(2)	(2)	(16)

앞으로 범죄예방 방법 중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은?	경찰기관	5	7	4	5	7	6	6	7	47
	(4)	(6)	(3)	(4)	(6)	(5)	(5)	(6)	(6)	(39)
	민간경비기관	0	4	5	7	7	4	2	2	31
	(0)	(3)	(4)	(6)	(6)	(3)	(2)	(2)	(26)	
개인적 대책	8	2	6	5	5	2	5	5	38	
	(7)	(2)	(5)	(4)	(4)	(2)	(4)	(4)	(32)	
기타	1	1	0	0	0	0	1	1	4	
	(1)	(1)	(0)	(0)	(0)	(0)	(1)	(1)	(3)	

*자료: 공배완(2008)

현대사회에서는 복합적인 사회위협과 신종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의 정보유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위협의 종류와 위협에 대한 결과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침입·도난·테러와 같은 물리적 위협과 정보의 유출·변조·해킹 등과 같은 정보적 위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9]. 이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확대와 기능의 향상도 총체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고, 시민생활의 안녕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범죄예방기구로서 자리매김 되어져야 한다.

3.2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기구로서 민간경비업체가 공리성과 영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임으로서 순수한 공익차원에서의 범죄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는 지역성을 배경으로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범죄신고, 안전귀가, 청소년보호, 실종사건대응, 노인과 부녀자 보호, 취약지역 순찰 등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통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마을 단위로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 관계를 갖고 방법활동을 하는 자율봉사 조직이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소통기구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역사(네이버 지식사전)는 1953년 11월 공비토벌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洞), 리(里) 단위로 '주민야경대'가 발족되어 주민들이 윤번제로 방법순찰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방법원(防犯員)이란 제도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경찰의 지도협조로 동리의 야간방법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방법

순찰활동과 현행법체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62년부터는 각 파출소 단위의 자율방법협의회에서 매월 세대당 일정액의 방법활동비를 징수하여 소속 방법원들에게 지급하는 유급제가 시행되었으나, 1989년 정부의 준조세 폐지방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던 방법활동비 징수를 폐지하고 방법원 전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자율방법'이라는 취지가 퇴색되었으나 무급제의 순수한 주민자치형 자율방법대는 지속되어 유지되어 오다 1992년도에 전국적인 자율방법대 조직 재정비를 단행하여 일제 발대식을 가졌고²⁾ 현재의 자율방법중앙회가 조직되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인 자율방법대 조직은 3,971개로서 활동인원은 98,5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동년 민간경비업체의 수 3,651개 보다 약 300여개가 많은 수준으로서 범죄예방 및 노약자 보호 등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자율방법대는 순수한 민간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구조 및 자원, 활동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26일 자율방법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법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어(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법대의 위상정립과 역할강화를 제도적으로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자율방법대의 운영은 1개 치안센터 관내에 1개의 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명칭은 00동 자율방법대로 한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장과 총무 및 대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비 등 예산은 각 구의 자체재정에서 지원하지만 관리감독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자체재정은 명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의 경우 자율방법대는 25명이 소속돼 있고 영등포구청은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원 1인당 월 1만 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는 월 26만~28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자율방법중앙회). 이러

한 열악한 상황에서 방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출석 및 경찰기관으로부터 받는 연 2회 가량의 직무교육도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다.

자율방법대는 지역사회의 기초안전지킴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력의 공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경비의 혜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저소득층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며 시민의 방법장치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법대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3.3 기타 시민단체

치안환경의 위협과 구분별한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범죄예방과 노약자보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은 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조직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동기와 방법, 대상은 다르지만 '시민생활의 안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자체경비조달이나 후원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고 자발적 활동이 많으나 규모나 설립방법, 연혁 등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법 및 생활안전 관련 시민단체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구나 정부기관도 없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수 시민단체의 안전 활동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들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가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역주민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전감을 줄 수 있고, 잠재적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 또는 유보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몇 개의 시민단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생활안전협의회는 민간범죄예방기구로서 지구대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1,887개 조직에 36,53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6643>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조직체나 연혁, 구체적 활동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곳은 아직 없었다.

반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녹색 어머니회는 1969년 6월 초등학교 단위별 ‘자녀교통지도반’으로 출범하여 1971년 12월 치안본부에서 ‘녹색 어머니회’로 명칭 변경하여 6대 도시위주로 지부를 결성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지방경찰청단위구역별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2009년 6월 현재 전국 5,700개 초등학교 46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등을 하고 있다³⁾. 녹색어머니회는 방법의 기능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계도를 함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의 시민안전을 돕고 있다.

기타 최근 전국적인 조직체로 확산되고 있는 패트롤 맘(Patrol Mom)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이 있고, 지자체에서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어머니 폴리스 제도가 있으며, 해병대 전우회, 어머니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수 많은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개인이나 민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임의 시민단체로서 지역을 거점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 활동하고 있으며 기부금이나 기여금 또는 자체경비조달 방법에 의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화, 홍보화, 광역화 되어가는 사회적 범죄현상을 감안한다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4. 민간기구의 범죄예방 한계점

4.1 제도적 한계점

민간단체의 방법활동에는 많은 제도적 제약성이 따르고 있다. 법적 사법권자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공권력이 일반 순수 시민단체에 의해 행사되는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추고 감독기관의 공식적인 인준을 받아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재차의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한부여가 필요하다고 본

다.

경비업법에 근거를 두고 법적으로 허가된 자에 한해서만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경우 법적 보호장치나 범죄대응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으므로 해서 수동적이고 소심적 대응으로 범죄예방 기능에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며 일반 시민들의 민간경비 의존현상도 증가되어가고 있다. 공배완(2008)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한계성으로 전체의 34%가 일정 사법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 기구로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6%가 경찰기관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간경비회사(22%), 개인적 대책 마련(16%) 등의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민간경비의 신뢰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1%가 ‘신뢰 한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민간경비에 대한 시민의 의존현상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가 효과적인 범죄예방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 활동에 걸 맞는 현행법 체포권 등 일정 사법권의 부여도 고려되어야 하며, 자격제도를 설치함으로써 자격에 따른 차등적 권한의 부여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시민단체의 경우 순수 자발적 봉사단체로서 현실적 공권력의 사용은 전무하며 불가능하다. 이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및 안전계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이 친목모임 정도로 변질되거나 이익단체로서 역할이 왜곡되는 현상도 우려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시민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관(官) 주도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난립으로 갈 수 있는 중복성을 정리 및 조정하고 적절한 역할이 부여될 수 있는 지자체의 관리나 지원체제가 제도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4.2 활동의 제약성

경비업법에 따르면 민간경비업체의 활동 영역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뒤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영역에 국한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3) <http://www.koreagreenmother.or.kr/>

현실적인 범죄의 다양화 추세에 비교해 본다면 극히 제한적 범주 내에서 민간시큐리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의 한계성과 시큐리티 사업영역의 확대가 제한당함으로 보편적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성이 내재되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업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능은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영리기업으로서 법인의 설립조건과 자유로운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준하고 있으며, 직업선택과 직업활동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2]. 그러나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법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2].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모든 영리법인은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적 시장패턴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조직된 일반 시민단체의 경우 활동영역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조직결성 시의 제시된 활동목표에 따라 단체의 성격이 규정되고 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이고,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조직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범주에서 벗어나 있고, 활동에 필요한 자원조달에 있어서도 외부 의존적이거나 자체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활동이나 단체의 활동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단체의 활동범주는 지역성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제도적이라는 내용적 한계에 설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적극적 대민활동도 제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발적 조직체를 활용한 범죄예방대책의 필요성도 이러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4.3 전문성의 한계점

전문성(專門性)이라 함은 전문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말한다. 즉, 어떤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전문성이라 함은 일반인들의 보통적 활동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식적이며, 효율적 활동으로 실질적 범죄감소에 효과를 가져 오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간경비업체는 과거에 비해 첨단장비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요소가 남아 있다. 즉, 범죄예방장치 기기의 발달로 인해 업체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전문가적 요인을 평가하는 경비원의 자질측면에서는 제도적 평가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전공이 설치되어 많은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특정영역에 관한 전문성 교육보다는 포괄적 시큐리티에 대한 이론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는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공인자격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자격’이란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제도’는 전문분야에 대해 공식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경우 관련 산업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 교육체계의 마련 등은 발전하였지만 전문인으로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렵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의 확보,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민간경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도 설치되어야 한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일반 시민단체의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 미흡한 수준이다. 순수 자원봉사 성격의 시민단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관련 영역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주기적인 전문교육 시스템을 갖춘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강요된 사회적 의무도 아니며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활동과제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그 한계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율방법대 등 오랜 연혁을 지니고 있는 특수한 시민 봉사단체의 경

우 조직 및 교육체계가 활동의 목적에 맞도록 짜여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있으나 사전교육이나 실무교육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의 가시적 활동은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파행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5. 결 론

범죄는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억제 될 수 없는 활성체이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범죄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람과 제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범죄의 예방과 억제대책으로서 국가기관이 전통적으로 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범죄의 다양화와 대량화, 조직화, 전문화 등은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며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악의 집단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민간단체의 출현은 이와 그 맥을 같이하며 주민생활의 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와 시민봉사단체는 범죄의 억제와 제지보다는 ‘예방’이라는 역할구도에서 제한적 활동을 하고 있다. 재정적 후원이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활동의 한계도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공익성에 대한 기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와 관리체제를 조정하거나 재정립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이 효율적 범죄예방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경비업체의 경우 현재 경찰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일반 시민단체의 경우 사회봉사성격의 자체조직에 의해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기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와 지원책이 요망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민간경비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4천여 개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경비원 수는 약 1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반 시민봉사단체의 수도 정확한 추산이 어려울 정도

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남아 있는 과제는 이들의 활동이 설립목적에 맞도록 제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후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보완적 관계에서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예방역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들의 활동이 선연적으로 끝나지 않고 효율적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1] 공배완, ‘민간경비론’, 경남대출판부, 2011.
- [2] 공배완, “영리기업으로서 민간경비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성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181-189, 2011.
- [3] 공배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보론집, 제7권 제2호, pp.51-71, 2010.
- [4] 공배완,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역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한국경찰학회지 제16호, pp.1-17, 2008.
- [5] 공배완,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찰학회연구 12호, pp.51-73, 2006.
- [6] 김상균,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07.
- [7] 네이버 지식사전
- [8] 서진석, “우리나라 시큐리티 산업의 정책방향”,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p.41-52.
- [9] 안황권, “시큐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융합보안의 대두와 물리보안업체의 대응”,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1-40.
- [10] 이상원,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2010.
- [11]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 [12] 정신교, ‘범죄학개론’, 형설출판사, 2005.
- [13]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09.
- [14] Charles A. S. Ennewald, ‘Effective Security Management’, Fourth Edition, 2003.
- [15] Vellani, Karim and Nahoun Joel, ‘Applied Crime Analysis’, Elsevier Science Publishing, 2001.

————— [저 자 소 개] —————



공 배 완 (Bae-Wan Gong)

1989년 6월 학사

1990년 6월 석사

1993년 6월 박사

email : gbw21c@yahoo.co.kr